
주요국 기준조세체계 조사 및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 최신화를 위한 출장 보고서

2025. 07.

목 차

I. 개 요	1
1. 출장목적 및 논의주제	1
2. 세부일정	2
II. 기관별 주요 면담 내용	4

1. 개 요

1. 출장목적 및 논의주제

- (일시) '25. 7.2(수)~7.11(금), 8박 10일(출·입국일 포함)
- (장소) 프랑스 파리, 스위스 취리히, 독일 본
- (출장자) 이태석 선임연구위원
- (목적)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의 정의, 분류, 평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개선
 -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관련 연구자들과 주요국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프레임워크, 법제화 수준, 성과평가 기법 등을 공유하고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의 시계열 연장 및 향후 정례적 데이터 업로드 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프랑스 파리 OECD Performance and Monitoring Budgeting Division(PMB), OECD Technical Committee on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TPC), 스위스 취리히 The Council on Economic Policies (CEP), 독일 본의 German Institut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IDOS)
 - 주요국의 조세지출 분류체계 및 조세지출 항목 구조조정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방문기관 및 면담 주제)
 - OECD: 국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개선방안
 - CEP: 조세지출의 합리적 식별과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기준조세체계 정의 원칙 및 시사점
 - IDOS: 2024년 독일 보조금·조세감면 구조 분석과 한국의 기준조세체계 관련 합의 및 GTED 자료 최신화 개선방안 협의

2. 세부일정

일자	시간	내용	면담자
7.2 (수)	11:10~18:30	출국(인천→파리)	-
7.3 (목)	10:00~12:00	OECD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n BLONDAL(Division(PMB) Head, GOV) - Andrew BLAZEY(Division(PMB) deputy Head, GOV) - 이호근(OECD 대표부 참사관) - 최상대(OECD 대표부 대사) - Tom ZAWISZA(Economist, CTP) - Bert BRYS(Unit(country tax policy) Head, CTP) - Gioia DE MELO(Tax Economist, CTP) - Jebong LEE(Policy Anlalysis and Advice, CTP)
	12:00~14:00	점심시간	
	14:00~18:00	OECD 면담	
	18:00~20:00	간담회(만찬)	
7.4 (금)	9:10~10:25	이동 (파리→취리히)	-
	14:00~17:00	CEP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urim Aliu(fellow, CEP) - Sofia Berg(Research Analyst, CEP)
7.7 (월)	10:00~13:00	CEP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exander Barkawi(Founder and Director, CEP) - Agustin Redonda(Senior Fellow, CEP) - pepa Echanove Hornos(commuications manager, CEP)
	12:00~14:00	점심시간	
	15:00~18:00	CEP 면담	
	18:00~20:00	간담회(만찬)	
7.8 (화)	09:00~10:30	면담 자료 정리	-
	10:59~16:43	이동 (취리히→본)	-
7.9 (수)	10:00~12:00	IDOS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ian von Haldenwang(Project Lead & Senior Researcher, IDOS) - Chifundo Mchowa(Researcher, IDOS) - Julia Leininger(Head of Department, IDOS)
	12:00~14:00	점심시간	
	14:00~18:00	IDOS 면담	
	18:00~20:00	간담회(만찬)	
7.10 (목)	09:00~11:00	면담 자료 정리	-
	11:00~12:00	점심시간	-
	13:04~17:55	이동(본→파리)	-
	20:30~15:30 ⁽⁺¹⁾	이동(파리→인천)	-

II. 기관별 주요 면담 내용

방문기관 : OECD PMB, TPC

7월 3일 (목), 10:00~18:00

면담참석자: Jon BLONDAL(Division(PMB) Head, GOV), Andrew BLAZEY(Division(PMB) deputy Head, GOV), 이호근(OECD 대표부 참사관), 최상대(OECD 대표부 대사), Tom ZAWISZA(Economist, CTP), Bert BRYS(Unit(country tax policy) Head, CTP), Gioia DE MELO(Tax Economist, CTP), Jebong LEE(Policy Analysis and Advice, CTP) 8인

면담주제: 국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기준조세체계 및 조세지출 개선방안

- 조세지출의 개념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나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조세체계의 명확한 정립 및 공개가 필요
 - 현재 한국은 조세지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준조세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여, 감면 항목의 정책적 성격 구분이 불명확함.
 -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명시한 공식 문서를 작성하여 조세지출 통계와 연동하여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기준조세체계를 명시하는 과정의 정책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
 - 조세지출 포함 여부의 판단기준 명확화 필요
 -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될 항목과 조세지출로 식별될 항목 간의 구분 기준(법령 구조, 과세원칙, 정책성 등)을 명시하여, 향후 제도 신설·개편 시 일관성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조세지출 구분·평가·공개 체계 개선 방향 논의
 - 현재는 총액 중심 보고로 정책 목적별 조세지출 효과 검토에 한계가 있으므로, 항목별 조세지출 보고 강화 필요

- 조세지출을 대분류로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항목별 정책목적·수혜자·감면방식·법적근거 등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체계 정비 필요.
- 신규 도입 시 사전평가(ex-ante) 및 기존 제도의 사후평가(ex-post) 주기화, 내실화 필요
 - 모든 조세지출 신설 시 정책목표, 기대효과, 대안 수단과의 비교, 세수 감소 추정 등의 사전 검토절차를 제도화하여 정책도구로서 정당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
 - 일정 기간이 경과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기반한 효과성 분석 및 감축·폐지 여부 결정을 위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 감축 폐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사후평가의 개선방향 논의가 요구됨.
- 감면을 통해 줄어든 세수뿐 아니라, 대안적 재정지출과 비교한 기회비용(cost of forgone revenue) 관점에서 조세지출을 분석할 필요.
 - 특히 동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직접지출(direct spending) 수단과 비교해 조세지출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융소득 비과세 등과 같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에 대해 수혜집단 분석을 시행하여 형평성 분석을 강화할 필요
- 조세지출의 다수가 처음 설정된 정책목표와 현행 정책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수 있어, 과거 도입된 감면제도 중 정책 환경 변화로 유효성이 상실된 항목을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이해관계자 감면 요구 등 구조적 존치 문제 해소를 위해, 존치 요건 및 일몰 조항 의무화 등 제도적 관리 기반 강화 필요

□ 예산제도와 연계 및 정보공개 강화

- 조세지출은 예산지출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예산사업과 동일하게 편성·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예산사업에 비해 조세지출은 성과관리·성과분석이 부족해보임.
- 연례 보고서 외에도 국회 보고 및 국민 대상 공개 시 항목별 정책목적·성과·비용을 포함한 통합형 정보 제공 필요.

□ 국제 모범사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적 시사점 도출

○ 기준조세체계의 명확한 정의와 문서화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적 기준조세 체계 마련 필요

-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은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를 정의하여 공개
-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서의 '예외'로 정의되므로, 기준조세체계가 명확해야 조세지출 식별이 가능
- 법령상의 과세체계와 경제적 실질 과세 원칙을 고려하여 한국적 조세지출 관리 목적상의 목별 기준조세체계 문서화 및 공개가 필요

○ 조세지출의 포괄적 정의와 목록화

- 미국, 독일, 벨기에 등은 면세, 우대세율, 세액공제, 환급불허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조세지출 목록 유지
- 조세지출은 모든 비정상적 감면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단순한 비과세만 포함하는 것은 협소함.
- 감면 유형별 분류(면세, 우대세율, 공제, 환급 불허 등)와 항목별 정의 체계 정비 필요

○ 조세지출 산정 방식의 정교화 및 투명성 제고

- 미국, 호주, 독일 등은 세수손실법(Revenue Forgone)을 표준으로 사용
- 일부 국가는 예산지출 환산 방식(Expenditure Equivalent) 또는 차등영향 분석(Differential Impact)도 병행
- 조세지출 산정은 단일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보수적 추정과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결정에 실질적 근거 제공 가능

○ 정기적 보고 및 국민·의회 대상 정보공개

- 미국은 매년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 보고서 발간, 프랑스는 조세지출을 예산서 부속 문서로 제공
- 조세지출은 예산지출과 동일한 정보공개 의무를 갖는 재정 수단이며, 수혜자·목적·비용 모두 명시되어야 함.
- 조세지출 보고서는 정책 목표·감면 방식·법적 근거·수혜 계층 등 메타데이터 기반 체계로 정비되어야 하며, 대국민 설명 가능성 강화 필요

○ 사전·사후 평가제도의 제도화 및 내실화

- 아일랜드는 조세지출 평가 프레임워크를 2022년 개정하여 신규 조세지출 신설, 기존 조세지출 연장 및 변경 등 제안 시 사전평가를 통해 도입 전 정책목표, 정당성, 대안 수단 비교 등 분석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시행 후 실효성, 목표 달성도, 비용 대비 편익 등 분석함.
- 네덜란드는 조세지출 신설 시 사전정책평가 의무화, 영국·캐나다도 정기적 사후평가 수행
- 조세지출도 예산지출과 동일하게 도입 목적, 기대 효과, 대안 수단과의 비교, 성과 지표 설정이 필요
- 조세지출 신설 시 정책목표·효과·비용 대비 효과성 검토와 존치 조세지출에 대한 일몰(sunset clause) 또는 감축 검토를 위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내실화할 필요

○ 예산지출과의 통합적 정책수단 비교 관리

- 독일, 영국 등은 동일 정책 목표에 대해 조세지출과 직접지출 비교분석 체계화
-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지출이므로, 정책수단 선택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체지출 수단 대비 성과 분석 필요
- 조세지출이 예산과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직접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효율성·형평성 동시 평가 체계 구축 필요

□ (참고사례 1) 칠레의 조세지출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 공식적인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정의 부재하며, 기준조세체계 판단기준이 경제적 실질보다 법적 구조 중심
- 복잡한 세제 구조로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구분 불명확
- 조세지출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항목별 세수감소 추정의 정확성 및 투명성 부족
 - 우대세율·면세 위주, 세액공제·환급 불허 등은 누락
- 조세지출 신설 및 존치 시 정책목표·효과 분석 부재
 - 사전평가(ex-ante) 및 사후평가(ex-post)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조세지출 보고서에 정책 배경·기대효과·비용 대비 성과 정보 부족
- IMF의 권고사항

- VAT: 최종소비 과세 원칙, 자산·중간재에 대한 환급 보장
-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 원칙 기반 실질소득 과세
- 법인세: 순이익 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감면은 조세지출로 분류
- 모든 감면·우대조치 포함하여 조세지출 정의 확대
- 조세지출 목록 체계화 및 연례 보고서 발간하고, 항목별 세수감소 규모, 대상 집단, 정책 목적 공시
- 조세지출 신설 시 사전 정책평가(ex-ante) 도입, 존치 TE에 대한 정기적 사후평가(ex-post) 의무화
- 정책효과·형평성·대체가능성(cost-effectiveness) 중심 평가체계 구축

□ (참고사례 2) 콜롬비아 조세지출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 기준조세체계 부재로 인한 조세지출 식별 및 통계 왜곡
 - 명확한 기준조세체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떤 세제 감면이 조세지출인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세지출 식별이 불완전함.
 - 결과적으로 조세지출이 아닌 항목이 조세지출로 보고되거나, 실제 조세지출임에도 누락되는 사례가 존재함.
 - 항목별 추계가 아닌 총액만 보고하거나 일부 감면 항목만 선택적으로 측정되어 비용추계의 일관성이 부족함.
- 현행 조세지출 보고 방식의 한계
 - 중기재정계획의 부속자료로만 조세지출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항목별 정보 부족, 항목 수 미포함, 일관된 연례 보고 부재.
 - 예산 편성 또는 세제개편 시 조세지출에 대한 영향평가 부재
 - 법인세 및 소득세 조세지출에 대한 데이터 불충분함.
 - 부가가치세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 구분의 일관성 부족
- OECD 권고사항
 - 소득세 기준조세체계 정의: SHS(소비+순자산증가) 원칙에 기반하되 콜롬비아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접근법 도입.
 - 부가가치세 기준조세체계 정의: 최종소비 및 고정자산형성(GFCF)에 과세, 사업체는 환급 가능,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환급 불가.

- 항목별 조세지출 정의 및 측정 체계 수립: 소득세(법인 123개, 개인 124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세지출 목록화.
- 조세지출 신설 시 정책 목적의 명시, 대상자의 범위와 파급효과 분석, 비용 추정 등의 사전 평가 체계(ex-ante evaluation)가 필요하며, 존치 중인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정기적 사후 평가(ex-post evaluation) 제도화를 제안
- 세금 신고서 내 조세지출 구분, 보완자료 제출의무 확대, 다른 부처 자료 병합 등 데이터 정제 권고.
- 조세지출 목록, 항목별 세수 감소 추계, 산정 방법, 기준조세체계 등을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세지출 보고서 제안

방문기관 : CEP

7월 4일 (금), 14:00~18:00, 7월 7일 (월), 10:00~18:00

면담참석자: Flurim Aliu(fellow, CEP), Sofia Berg(Research Analyst, CEP), Alexander Barkawi(Founder and Director, CEP), Agustin Redonda(Senior Fellow, CEP), pepa Echanove Hornos(commuications manager, CEP) 5인

면담주제: 조세지출의 합리적 식별과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기준조세체계 정의 원칙 및 시사점

□ 기준조세체계 정의의 중요성과 한계 논의

- 조세지출은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예외 조항으로 정의되며, 기준조세체계 정의는 조세지출 식별·산정·평가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준
-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된 조항은 원칙적으로 조세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비용 산정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되면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 평가·감축 검토가 어려움.
- 기준조세체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할 때 비용 산정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지며,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평가 관리 대상이 너무 많아져 실질적 관리가 어려움.

□ 기준조세체계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

-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 이상적인 조세체계에 비취보아 현재 제도의 예외를 조세지출로 식별
 - 예시: 음주세가 외부불경제(건강, 사회비용 등)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상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낮은 세율은 조세지출로 간주.
- 법률적 접근(Legal approach): 실제 세법에서의 일반 조항과의 차이를 조세지출로 정의

- 예시: 표준세율이 10%인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 5%를 적용하는 경우, 이 우대세율은 조세지출로 간주.

- 대부분 국가들은 두 접근법을 혼합 적용

□ 기준조세체계 포함 여부가 애매한 조항들이 존재

- 국제협약 또는 지역협약에 따른 면세 (예시: 대사관, 지역무역협정 등)
- 외국인조사업에 대한 면세 (예시: 국제개발기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면세)
- 행정상 효율성 목적의 면세 (예시: 부가세 등록 기준, 금융서비스 면세)
- 공공기관 간 과세거래 면제 (예시: 정부부처간 서비스 거래시 부가세 면제)
- 이상의 조항들은 실질적으로 조세지출로 작용하지만, 기준조세체계에 포함되어 조세지출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정책평가·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국가는 조세감면을 구조적(Structural) 감면과 비구조적(Non-Structural) 감면으로 구분하여 관리

- 영국은 세법 체계상 본질적 요소인 감면은 "Structural Relief"로 간주하여 조세지출 보고에서 제외
- 캐나다는 제도의 근본 목적에 내재된 감면은 구조적 성격으로 보고하여 조세지출 외로 관리
- 그러나 구조적 감면도 명확한 문서화와 비용 추정을 통해 향후 개혁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구조적 감면도 정책효과와 비용을 수반하므로, 기준조세체계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문서화하고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개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조세지출이 식별되고 규모가 산정되었다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며 이는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검토에 필수적임.

- 멕시코는 조세지출을 수혜자 특성별(소득 수준, 산업, 성별 등)로 분석을 진행
- 호주는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제도(GST exemption on food)가 소득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주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은 형평성, 소득 재분배, 정책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특히 보이지 않는 지출인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를 명시적이고 정량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논의

- 세목별 기준조세체계 정의 및 문서화 필요하며, 조세지출 관리목적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현행 한국 제도는 기준조세체계 개념이 불명확하여 조세지출 판단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됨.
 -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조세체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기준조세체계의 구체화가 요구됨.
- 조세지출로 분류할 항목을 결정하려면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공식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
- 기준조세체계 포함 조항이라도 문서화 및 비용 추정 및 공개가 필요
 - 공공기관 과세 면제, 행정편의 목적 면세 등은 조세지출 성격이 혼재
 - 단순히 기준조세체계 포함이라며 조세지출 관리에서 배제하면 정책유효성 검토가 불가함.
- 기준조세체계내의 구조적 감면도 평가 기반 확보 필요
 - 소득공제 등 내부 목적을 가진 조항도 효과 분석·개혁 검토 위해 문서화 필요
- 조세지출 수혜자 분포 분석체계 강화 필요
 - 조세지출이 특정 소득계층·산업·성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포 분석 필요

방문기관 : IDOS

7월 9일 (수), 10:00~18:00

**면담참석자: Christian von Haldenwang(Project Lead & Senior Rese
archer, IDOS), Chifundo Mchowa(Researcher, IDOS), Julia Leininger
(Head of Department, IDOS) 3인**

**면담주제: 2024년 독일 보조금·조세감면 구조 분석과 한국의 기준조
세체계 관련 합의 및 GTED 자료 최신화 개선방안 협의**

□ 독일의 보조금 및 조세감면 현황 파악

- 2024년 독일의 전체 보조금 규모는 약 2853억 유로(GDP 대비 6.6%)
- 조세감면은 748억 유로(1.7% GDP)로 감소 추세, 주요 감면 항목은 사
회보장·의료 서비스 부가세 면제, 통근거리 공제, 교회세 공제 등 소
수 항목에 집중되어 있음.
- 연방정부 보조금은 1,273억 유로(3.0% GDP)로 2022년 대비 약 420억
유로 증가하였고, 증가의 핵심 원인은 기후·전환기금(KTF) 확대에 판
단됨.
- 연방 보조금 중 약 37%가 특별기금(Sondervermögen)을 통해 집행되
고 있음.

□ 정책적 문제점과 위험 요인 논의

- 보조금은 시장실패 보완에 유용할 수 있으나, 행정비용·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이해집단에 편익이 집중되거나 시장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위
험도 존재함.
- 독일의 경우 보조금과 조세지출에 대한 목록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목록의 완전성, 정기적 평가, 투명한 활용은 여전히 부족함.
- 이에 따라 보조금·조세지출에 대한 체계적 목록화 보완, 효과평가 강
화, 정보 공개 확대가 필요함.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논의

- 기준조세체계의 명확한 정립과 문서화가 선행되어야 함.
 - 독일은 조세감면·보조금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조세체계 정의와 체계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한국은 세목별로 과세 원칙과 기준조세체계를 공식 문서로 명시·공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지출 항목을 식별해야 함.
- 조세지출 전면 목록화와 정기적 평가 제도화 필요
 - 한국은 조세지출 항목을 단순 총액 중심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책목적·수혜자·법적 근거 등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체계적 목록화가 필요함.
 - 신규 조세지출 도입 시 사전평가, 존치 제도에 대한 주기적 사후평가를 제도화해 정책 효과성과 정당성을 검증해야 함.
- 예산제도와 연계 강화
 - 독일 사례에서 보듯 보조금과 조세감면은 ‘숨은 재정지출’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 직접지출과 조세지출을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비교·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함.
- 형평성과 효율성 검토 강화
 - 일부 조세지출은 특정 이해집단 편익에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융소득 비과세 등 고소득층 편중 항목에 대한 효과성과 형평성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TED 자료 최신화를 위한 향후 개선방안 및 협력 방안 논의

- 현행 GTED 자료는 각국 조세지출 공식자료를 취합하고 있어 기준조세체계의 조정이나 조세지출 관리체계의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
- GTED의 한국조세지출 자료가 2015년 이후 취합되고 있으나 1998년 이후 한국조세지출가 공개되어 있으며, 2009년 이후 상세한 한국조세지출 자료가 활용가능함.
- 다만, 조세지출 개념의 변동이 존재하여 공개된 조세지출 자료의 시계

열 단절이 존재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

- 이탈리아, 핀란드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하기에 원자료 공개와 함께 조세지출 관리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조정된 국제조세지출 자료 공개의 필요성과 실무적 한계 논의
- 추후 기준조세체계 마련과 조세지출 개념 재조정 과정의 시계열 단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거 시계열 조정을 통해 시계열 분석 가능성 확보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 논의